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관부서 : 기획실(T:5140)

제정	2000. 3.27. 농림부령	제1360호
개정	2001. 1.29. 농림부령	제1380호
개정	2005. 6.29. 농림부령	제1497호
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개정	2009.12.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07호
개정	2012. 3. 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62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개정	2015. 2.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개정	2015. 6.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
2조·제112조의5·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이
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
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
에는 자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가입신청) ①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2.27.>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 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5.6.25.>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해당 사업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①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2.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의4 삭제 <2012.3.2.>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2.]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34조의4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3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5.]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업무 개시 보고: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예외의 범위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5. 제10조에 따른 조합원의 검사 청구 시 조합에 대한 검사 절차: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2.27.]

부 칙 <제1360호, 200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을 삭제한다.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80호, 20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97호, 2005.6.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87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⑯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제107호,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2호, 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⑯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⑯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 <제136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46호, 2015.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2제1항 관련)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0조제4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조합장선거 후보자(이하 이 호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법 제51조제4항(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선전벽보의 규격

아래 규격에 따라 작성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크기 : 길이 53cm×너비 38cm

나) 지질 : 100g/m² 이내

다) 색도 : 제한 없음

2) 선전벽보 게재사항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

구·시·군위원회는 제출된 선전벽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가 가목 본문 전단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후보자가 가목 1)에 따른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제출마감일까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여 이를 수정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선거공보의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0조제4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30조제11항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가)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구·시·군위원회에

제출.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나)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구·시·군위원회에 제출
- 다) 조합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법 제51조제1항(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 라)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법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2)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 가) 크기 :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
- 나) 매수 : 1매(양면인쇄 가능,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3면 이내)
- 다) 지질 : 100g/m² 이내
- 라) 색도 : 제한 없음

3)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나.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조합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및 중앙위원회는 각각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하여 아래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 1)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2)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3) 조합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4)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다. 그 밖의 사항

선거공보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구·시·군위원회"는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조합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라. 조합의 이사 및 감사 선거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조합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 1)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50조제4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시·군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

- 1)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서는 연설행정부에 따라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 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 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서 시각까지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2)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구·시·군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4.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법 제50조제4항제4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 3) 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 5) 1) 및 2)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나.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 1) 구·시·군위원회(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2) 1)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에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구·시·군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1)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 및 기간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

-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